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노웅래・윤재갑・양기대

홍영표 · 소병훈 · 신동근

우원식 · 이개호 · 이상직

김회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실제 등하굣길에 비하면 10m 이내 구역은 그 범위가 너무 작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들의 민원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초·중·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도록 하려는 것임(안제9조제6항).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현행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2 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책임 있는 금연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쾌적 한 통학환경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4조제3항). 법률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10미터"를 각각 "30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34조제3항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6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	
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	
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u>.</u>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	1
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u>1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공	30미터
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	2
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	
터 <u>10미터</u> 이내의 구역(일반	<u>30미터</u>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	
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 ⑦ ~ ⑨ (생 략) 제34조(과태료) ①·② (생 략)
 -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 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는 <u>1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 과한다.
 - ④·⑤ (생 략)

-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 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⑦ ~ ⑨ (현행과 같음)
- 제34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u>20만원</u>-----
 - ④·⑤ (현행과 같음)